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52
----------	-------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강기윤 · 김미애 · 최형두
최영희 · 유상범 · 최연숙
백종헌 · 이종성 · 유의동
서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2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
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
른다.

제3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4조(「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5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6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 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 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3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 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 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 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4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 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3조(회수·폐기명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항에 따 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